



이상근

파트너변호사

TEL 051-502-2008
FAX 051-502-2340
E-MAIL sglee@jipyong.com

이상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1998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2008년 3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 6월부터 법무법인(유) 지평 부산 분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파산,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경남지역의 기업,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1982 부산동래고등학교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1994 제 36 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사법연수원 제 27 기 수료
1998-2000 예비판사 임명(창원지방법원)
2000-2001 판사 임명(창원지방법원)
2001-2003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3-200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2005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5-2006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장기연수
2006-2007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7-2008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8-2010	변호사 이상근 법률사무소 개소
2010-2012	법무법인 광개토 소속변호사
2017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2021	대한변호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2018-202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2018-2021	부산세관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2018-2021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비상임조정위원
2009-현재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사
2014-현재	하이록코리아(주) 고문변호사
2014-현재	극동글라스텍 건설부문(주) 고문변호사
2017-현재	부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2020-현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21-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2-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2026 선박 투자 실무 가이드북, 단장

[논문]

2026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해사행정사건 관할 신설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영국 · 싱가포르 · 중국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제38권 제2호

2026 해상보험자 대위권 행사의 법리적 한계와 선하증권상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동아법학 제11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명의신탁 법리,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양형기준의 규범성, 인권과 정의 제426호, 대한변호사협회

2010 우편역무종사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87798 판결, 判例研究 제21집, pp.909-974, 釜山判例研究會

자격 취득

1998 대한민국 변호사

2009 대한민국 변리사

언어

한국어 / 영어 / 일본어